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75
----------	-----

2021. 11. 30.(화)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11월 1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11월 23일

-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신용식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탈자 단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감면기한 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조제1항)
-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4조제1항)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5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안 제9조제2항)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도세 감면조례 해당조문 삭제(안 제8조, 안 제14조)

○ 탈자 단순 자구수정(안 제16조, 안 제19조)

- 제목 이외의 부분에 누락된 1항 표시 추가

3. 검토보고 요지 (김주희 수석전문위원)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본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 기간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바,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의 유효기한 종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하며, 탈자 수정을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2조는 도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간 연장하려는 것임.
 - 본 개정안에서 감면기한의 연장 대상 및 감면률은 다음과 같음.
 -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안제2조)
 -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건축물 취득세 면제 (안제3조)
 -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 (안 제4조)
 -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자가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 (안 제5조)
 - ▲ 도시가스사업(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안 제6조)
 - ▲ 한국가스공사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안 제6조)
 -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 (안 제9조)
 - ▲ 연구개발특구지역 개발·조성을 통한 분양·임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지역 내 부동산 취득, 특구 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 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안 제12조)

- 본 개정안에 따른 감면기한의 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3년의 기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바, 법률상 문제가 없으며, 충청북도의 복지 향상 및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최근 3년 간 감면실적이 없는 시장현대화사업(안 제3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안 제12조)에 대해서는 감면조항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8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 관련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항 제1호에 따라, 종교단체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률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함.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안 제14조는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5항 및 현행 조례에 따른 감면적용 기간 5년의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안 제16조와 제19조는 단순 탈자 수정으로, 현행 조례에 빠져있던 제1항을 표기한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유효기한이 종료된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탈자를 수정한 것으로 법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음.

<참고자료>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른 감면현황(2018~2020)

(단위: 천원)

조문	감면 사항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44,859	659,017	50,215
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8,142	6,863	3,112
3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
4조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	664	-
5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129,793	17,226	-
6조	도시가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6,924	115,430	24,510
9조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	518,834	22,593
12조	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	-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5
----------	-----

제출연월일 : 2021년 10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며, 탈자 단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감면기한 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조제1항)
-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4조제1항)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5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안 제9조제2항)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문 일몰기한 종료에 따라 도세 감면 조례 해당조문 삭제(안 제8조, 안 제14조)
- 탈자 단순 자구수정(안 제16조, 안 제19조)
 - 제목 이외의 부분에 누락된 1항 표시 추가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행	개정안
<p>②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가스관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u>2021년 12월 31일까지</u>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제8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 : 100분의 20 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 : 100분의 40 <p>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p>② ----- ----- ----- ----- ----- 2024년 12 월 31일----- -----, ----- ----- ----- -----.</p> <p><u><삭 제></u></p> <p>제9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 -----

현행	개정안
<p>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1. ~ 3. (생략)</p> <p>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2021년 12월 31일까지</u>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p>	<p>----- ----- ----- <u>2024년 12월 31일</u>-----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u>2024년 12월 31일</u>-----, ----- ----- ----- ----- -----</p>

현행	개정안
<p>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p>	<p>----- ----- -----.</p>
<p>제14조(도세 감면율 적용 특례)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의 경우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제8조 및 법 제3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청주시가 설치된 때부터 5년간 통합되기 전 청원군 지역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p>	<p><u><삭 제></u></p>
<p>제16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생략)</p>	<p>제16조(감면 제외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p>	<p>제19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2021. 6. 8.>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③ 생략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신설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8. 12. 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으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

2. 비용 발생 요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7개 조문에 대한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취득세 감면

3. 주요내용

- 도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안 제2조~제6조, 안 제9조, 안 제12조)
(현행) 2021년 12월 31일 → (개정) 2024년 12월 31일

<감면기한 연장 대상조문>

- 시각장애인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2조제1항)
- 상인조직 등이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3조제1항)
- 농수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등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4조제1항)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안 제5조제1항)
- 도시가스사업자, 한국가스공사 등이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25 경감(안 제9조제2항)
-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 조성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감면 예상액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감면액 평균으로 추계

(단위: 백만원)

구분	조 문 내 용	최근 5년간 감면액						5년간 평 균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7개 조문	1,131	225	52	145	659	50	226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43	12	13	8	7	3	8
제3조 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0	-	-	-	-	-	-
제4조 제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84	83	-	-	1	-	17
제5조 제1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183	-	36	130	17	-	37
제6조 제1항 제2항	도시가스사업 지원 감면	280	130	3	7	115	25	56
제9조 제2항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	541	-	-	-	519	22	108
제12조 제1항 제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0	-	-	-	-	-	-

○ 제12조제1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2021. 2. 10. 신설)은 최근 5년간 감면액 평균으로 추계 불가

- 산출과정 : 50억원(과표) × 4.4%(취득세·지방교육세 세율) = 2.2억원

· 토 지 : 2,000㎡ × 200,000원 = 4억원

· 건축물 : 2,300㎡ × 2,000,000원 = 46억원

▶ 대상지역 공시지가 : 평균 200천원/㎡ 정도(오창읍 송대리)

▶ 건축비 : 국토부 고시 2020년도 표준건축비 2,000천원/㎡

⇒ 입주예상 기업수 : 2022년 1개소, 2022년 2개소, 2023년 2개소

나. 추계 결과 : 17억 7천 8백만원(226백만원 × 3년 + 220백만원 × 5개소)

(단위: 백만원)

구분	조 문 내 용	감 면 율	연도별 감면예상액(추계)				비 고
			계	2022	2023	2024	
계	7개 조문		1,778	446	666	666	
제2조 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	취득세(100%)	24	8	8	8	전 국 공 통
제3조 제1항	시장현대화사업 감면	취득세(100%)	-	-	-	-	전 국 공 통
제4조 제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취득세(75%)	51	17	17	17	전 국 공 통
제5조 제1항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취득세(75%)	111	37	37	37	전 국 공 통
제6조 제1항 제2항	도시가스사업 지원 감면	취득세(50%)	168	56	56	56	개 별
제9조 제2항	관광단지 투자촉진 감면	취득세(25%)	324	108	108	108	전 국 공 통
제12조 제1항 제2항	연구개발특구 지역 감면	취득세(100%)	1,100	220	440	440	개 별

5. 재원조달 방안

- 세제감면을 통한 간접적 지원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 감면예상액은 연도별 약 6억원* 수준으로 도세 총 징수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세수실적의 주기적 분석, 납세홍보,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등으로 세수확보 노력

* 비중 : '20년 도세 징수액(1조5,560억원) 대비 0.039% / 감면액(2,176억원) 대비 0.28%

6. 작성자 : 세정담당관 세무6급 이재민